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72140 취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 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구합1742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570,820원, 지방교육세 3,003,880원, 농어촌특별세 3,754,7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6,083,351원, 지방교육세 918,997원, 농어촌특별세 1,148,703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4,147,940원, 지방교육세 3,093,990원, 농어촌특별세 3,86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570,820원, 지방교육세 3,003,880원, 농어촌특별세 3,754,7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각 세액에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남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항 직권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종전 건물과 이 사건 대체 건물이 연접하여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이 사건 대체 건물이 아니라 종전 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건물(B)과 이 사건 대체 건물(D)은 그 주소가 다른데 이 사건 대체 건물의 주소지를 사용장소로 하여 전기요금이 부과되었고 종전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도 상당한 전기요금이 부과된 점(갑 제7호증의 18)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명확히 특정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실상의 사용일이라는 개념상 이를 정확한 날짜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21. 12. 27.)로부터 1년 이내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사실상의 사용일이 2022. 12. 27.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사실상의 사용일'이라고 규정할 뿐, '본래의 목적에 따른 사용' 또는 '정기적·지속적인 사용'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설령 원고가 2022. 11.경 이 사건 대체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목 및 동별 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단위 : 원)

동별	(A)시가표준액 동별 비율(%)	취득세	(C)취득세 안분세액	지방교육세	(D)지방교육세 안분세액	농어촌특별세	(E)농어촌특별세 안분세액	(C)+(D)+(E)=(F)안분세액 합계
1동	18.14879804	52,570,820	9,540,971.95	3,003,880	545,168.11	3,754,710	681,434.73	10,767,574.80
2동	33.2782287		17,494,637.71		999,638.06		1,249,500.98	19,743,776.75
3동	12.44489008		6,542,380.77		373,829.56		467,269.53	7,383,479.86
4동	20.74148347		10,903,967.94		623,049.27		778,782.55	12,305,799.77
5동	15.3865997		8,088,861.63		462,194.99		577,722.20	9,128,778.8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대체 건물 1, 3동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그 세액은 취득세 16,083,351원¹⁾(= 9,540,971원 + 6,542,380원), 지방교육세 918,997원(= 545,168원 + 373,829원), 농어촌특별세로 1,148,703원(= 681,434원 + 467,269원)으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08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정○○

판사 조○○